

- 2023. 10. 11.: 입안 반영 통보
- 2023. 12. 11. ~ 12. 26.: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
- 2024. 1. 4. ~ 1. 18.: 환경영향평가항목 공개 공고
- 2024. 1. 29. ~ 2. 28.: 주민 열람공고

5. 근거법률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6항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제출 근거

- 본 안건은 군수 제출안건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주요내용

- (건 명) 고성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
- (위 치)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산54-1번지 일원
- (면 적) 1,093,559.9㎡
- (주요내용)
 - 용도지역 변경(농림지역, 보전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)
 -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

○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고성군 회화면 내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구에 대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, 입지에 따른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음으로 판단되나

- 입지 타당성 측면에서는 ① 일부필지 제외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형화 및 구역화가 부족하며 ② 높은 평균 표고(67.3M)로 인한 사업시행상 과도한 절토 공정 불가피 ③ 국유지(0.3%) 및 공유지(0.4%)에 대한 취득·대체방안의 확실성 부족 ④ 농림지역(73.74%)의 과도한 분포 등의 우려사항이 있으며

[참고]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내역

(단위: m², %)

구 분	기정(A)	변경(B)	증감(B-A)	구성비
계	1,093,559.9	1,093,559.9	-	100
계획관리지역	281,812.6	1,093,559.9	811,747.3	100
보전관리지역	5,304.1	-	△5,304.1	-
농 립 지 역	806,443.2	-	△806,443.2	-

- 아울러, 사업 실현성 측면에서 향후 개발사업 시 개별법령에 따른 필요 조치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
- 특히,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 열람공고 및 설명회가 진행중인 실정으로,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동향 및 주요 민원사항은 물론, 향후 사업 추진과정 시 발생 우려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4. 2. 15. 찬성의견 채택